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11월 6일
-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 제안이유

재사용봉투의 용량을 추가로 신설하고 제작·사용 중단된 봉투 3종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종량제봉투 이용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재사용봉투 10L 신규 제작 (안 별표3)
 - 판매가격: 250원
- 나. 제작·사용 중단된 봉투 3종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8조~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3조, 안 별표3)
 - 생활폐기물용 100L, 사업장용 50L, 특수폐기물용 50L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3)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32,718천원 반영

다. 해당부서: 자원순환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9. 27. ~ 10. 17.)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작이 중단된 고중량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신설하는 소용량 재사용 봉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3조에서 현재는 제작 및 사용이 중단된 봉투의 규정을 삭제하고

- 생활폐기물용 100L: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¹⁾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²⁾에 따라 사용 중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사업장용 50L: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용량 부족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용 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이 금지되어 사용 중단
- 특수폐기물용 50L: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²⁾에 따라, 특수마대 규격을 20L 이하로 제작하도록 규정하여 사용 중단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거 하루 10회 이상 25kg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근골격계부담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가득 채워 배출된 100L 종량제봉투는 배출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수집·운반하는 근무자들의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2) 특수마대(PP포대) 50리터는 원래 13kg이하로 무게 제한이 있지만 불연성 일반쓰레기의 특성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특수마대(PP포대) 규격을 20L 이하로 제한하도록 개정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 별표3에서는 사용이 중단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생활폐기물용 100L, 사업장용 50L, 특수폐기물용 50L]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10L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지침[「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편의를 위해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용 100L와 사업장용 50L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 과도하게 배출된 종량제 봉투의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공무원의 부상 방지 및 근무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市) 자원회수시설 반입 전면 금지를 규정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유도함으로써³⁾

-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회수시설·수도권매립지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⁴⁾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를 추가하였는데,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⁵⁾
 - 용량이 작은 10L 재사용 봉투 사용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및 청소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 3)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처리하는 비용이 더 저렴함. 이에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 의지 부족으로, 재활용 및 분리배출 역시 소홀해짐
- 4) 강서구 1인가구 비율 37.3%(2022년 말 기준) [출처: 제35회 2020 강서통계연보]
- 5) 환경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선언하고, 소매업체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대체재로 종이봉투·재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가 권장되며, 당분간은 친환경 봉투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는 1년간의 단속·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기간임.

□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1.개정)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 20L 규격 이하로 제작, 1인 10장 이상 판매 제한

□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시 소재 4개 자원회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운영사와 시설 내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 및 위탁 수거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시설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은 시설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이하 “불법 폐기물”이라 한다)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반입이나 반입 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또는 위탁수거 업체에 대하여 별표 4의 위

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치구 또는 위탁수거업체의 반입허용 기준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치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기준 위반으로 반입 정지를 받은 차량이 수거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의체나 운영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홍보요원으로 하여 금 해당 지역에 출장하여 성상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 ① 300kg이상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배출업체 중 폐기물을 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출자 현황을 시설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배출시 사업장 종량제 봉투에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유성매직 등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별표 6 규격에 의한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에 소재지, 업체명, 연락처 등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설 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부칙 <2021.6.15.>

제2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반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본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에 관한 제10조(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제12조(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반입)등” 규정은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적용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경과조치 이외의 모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한다.

부칙 <2022.6.28.>

본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